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

이혜원 *

이 연구는 아동권리 국제협약(CRC)의 국내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아동권리유형화 기준과 아동권리지표에 근거하여 CRC와 국내 아동복지법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1) 국내 아동복지법은 시민·정치적 권리영역에 있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위탁보호·입소관련 의사표시권만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영역에 있어서는 치료 차원의 시설보호관련 권리로 치중되어 있고 예방 차원의 상담·단기보호 등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아동의 생활보장권, 외국·난민(탈북)아동의 보호권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CRC의 아동권리유형별로 분류하면, 생존권 보장이 미흡하고, 발달권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제한되며, 참여권은 2기 조항에 불과하다. (2) 아동권리지표(10개 분야 30개 지표)별로 분석하면, 전체인구의 29.9%인 아동의 성비격차·안전사고사망률·장애출현율·폐질환유병률이 높고, 장애아동의 보육수급률이 낮다. 특히 편부모가구 및 이혼가정 자녀수와 아동학대발생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아동의 6.3%는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의 1.1%에 불과하며, 책정된 예산의 96.3%는 대리보호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아동의 생활영역 중 가족·

* 이 연구는 한국발심리학회와 <청소년·법·심리>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하였음.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사회보장분야가 가장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향후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1. 문제제기

우리나라가 아동권리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이하 CRC)에 비준하여 협약의 당사국이 된지 올해로 10주년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아동권리선언(1959)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CRC(1989)로 발전하여 191개국이 비준하고 아동을 생존·보호·발달·참여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여 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아동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고 있는가는 또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를 미덕으로 존중하는 전통적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연령차별적 생활의식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남녀차별을 남녀차이로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유유서를 연령차별로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은 아동권리에 대한 우리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아동·부모·교사의 아동권리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재연·이소라, 1998)는 아동이 자기결정 등 권리의 참여적 측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부모와 교사는 권리의 보호적 측면만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곧 아동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성인들의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일본·미국·프랑스의 만 14~17세 아동 1,000명씩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 2000)를 실시한 결과, 한국 아동의 가정·학교·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미국 아동이나 프랑스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미국 72.2%, 프랑스 53.5%, 한국 15.5%, 일본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나 일본이 전통적 유교사상으로 인해 아동권리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법적 구속력 또한 미흡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 예로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체벌이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는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조차 훈육과 혼동되어 수용되거나 권장되고 있으며, 부모와 교사에 대한 순종이 전통적 미덕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행 아동복지 관련법은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하고 있을 뿐 자신의 생존·보호·발달·참여를 위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에 관한 규정조차도 선언적 의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국내법과 모순되는 CRC의 3개 조항을 아직도 유보하고 있다. 즉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제9조)과 입양에 있어서 관계당국의 허가규정(제21조), 그리고 아동재판에 관한 상소권(제40조)이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부모의 이혼 후 한 부모의 동의 없이는 다른 부모를 만날 수 없는 아동, 입양 및 친권상실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15세 미만의 아동, 수 차례 파악된 아동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보조항 관련사례 외에도 기아, 임상실험을 당한 영아시설아동, 결식아동, 학대받는 아동, 학교에서 체벌이나 폭력을 당하는 아동, 강제 이발·소지품 검사 등 비인격적 규제를 당하는 아동, 매춘을 강요당하고 감금된 상태에서 화재로 숨진 아동, 노동을 착취당하는 아동 등 인권침해 사례들이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이배근·이용교·류우숙, 1997; 배경내, 2000; 국제신문, 2000. 1. 20; 한겨레신문, 2000. 10. 2; 사회복지신문, 2000. 10. 11; 연합뉴스, 2000. 10. 13).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여 제2차 정부보고서(변용찬, 1999)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배수, 1999: 36~38).

따라서 협약 당사국이 된지 10년이 되는 현 시점이 우리사회에서 CRC에 규정된 아동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아동권리의 유형화 기준(*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3)과 아동권리지표(아동권리학회, 1999)를 비교분석틀로서 재구성하여 CRC와 국내 아동복지법의 차이점을 내용분석하고, CRC의 국내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국내에서 CRC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국내 아동복지관련법 가운데 아동복지법만을 다루고자 하며, 아동권리지표별 자료 수집에 있어 선행조사 자료들간 연도별 차이와 아동권리지표의 항목 및 비교기준의 제한 등을 이 연구의 한계로 밝히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아동권리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E. Jebb을 중심으로 작성된 세계아동현장(Save the Children Fund International, 1922)이 요보호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국제연맹, 1924)으로 채택되고 일반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UN, 1959)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CRC(UN, 1989)가 채택되어 전세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었다.

CRC는 전문(협약의 기본 정신)과 본문 54개 조항으로 대별되며, 본문은 다시 제 1부 실질적 규정(구체적 아동권리의 보장: 제 1조~제 41조)과 제 2부 이행과 감독(당사국의 실천의무: 제 42조~제 45조), 그리고 제 3부 부칙(협약의 비준절차: 제 46조~제 5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 1부의 41개 조항은 아동 정의를 포함한 실천원칙(제 1조~제 3조)과 실천방법(제 4조~제 5조, 제 41조), 그리고 아동권리(제 6조~제 40조)의 내용으로 분류된다. 특히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이하 ISCA, 1993: 16)는 제 6조부터 제 40조에 나열된 아동권리를 아동의 발달 특성과 욕구에 근거한 CRC의 실천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유형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고, 각 기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 (1) 생존권: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 급여를 받을 권리
- (2) 보호권: 아동이 차별·학대·방임·착취로부터 보호를 받고, 난민 아동·법률 접촉 아동·소수민족 아동이 특별 보호를 받을 권리
- (3) 발달권: 아동이 정규적·비정규적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
- (4) 참여권: 아동이 관련된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이러한 기준별로 분류되는 아동권리를 다시 세계인권선언(UN, 1966)의 A·B협약 기준에 기초하여 즉각적 권리영역과 점진적 권리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안동현, 1999: 30~35). 전자는 즉시 이행되어야 할 시민·정치적 권리영역으로서 아동의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는 권리, 아동에게 차

별과 형사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독립적인 제도 아래 다루어지고 보호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후자는 점진적으로 이행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영역으로서 아동의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 여가권 등 전자에 속하지 않는 권리들이 포함된다. 이를 CRC의 조항별로 구분하면, 시민·정치적 권리영역으로는 제 7조·제 8조·제 13조~제 17조·제 37조가 해당되며 나머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영역에 속한다. 후자는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기본 건강과 복지, 교육과 여가 및 놀이, 난민아동·법률저촉아동·피학대아동·소수민족아동의 특별보호로 재분류된다(ISCAR, 1993: 195).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CRC의 아동권리 내용을 조항별로 요약하고, 조항별 내용을 아동의 권리영역 및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 아동권리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CRC의 제 2부는 협약 이행과 감독을 위한 실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44조는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가입 후 2년 이내,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제 1차 정부보고서를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NGO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1996년에 14개 항목의 권고사항으로서 통보하였다(이배근, 1998: 366).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국내법과 모순된 CRC의 3개 조항(부모면접교섭권·기관입양·상소권)의 이행
- (2) 최저 혼인연령에 있어서 남녀차별 폐지,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의 국내법적용,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권 보장
- (3) 특수 상황에서 일부 제한된 표현의 자유(헌법 제 37조) 허용
- (4) 폭력·학대·착취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적극적 예방·치료 규정의 보완
- (5) 난민아동의 특별보호 규정, 최대근로시간의 규제, 최소고용연령의 상향조정
- (6) 아동권리의 모니터를 위한 옴브즈맨제도, 인권교육 등 다원적 체계의 정비
- (7) 아동권리의 모니터를 위한 정보수집체계의 개선 및 아동권리지표의 개발

UN이 권고한 (1)~(3) 가운데 (2)의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권이 민법 개정(1997)에 따라 보장받게 되었으며, 나머지는 아직 유보되어 있다. (4)는 아동복지법 개정(2000)에 의해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전문적 기입

이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한편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개정(1997)되면서 학교 체벌 허용 소항(제 76조)이 폐지되었으나, 2000년 1월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교육적 체

〈표 1〉 아동권리 국제협약(1989)의 내용분석

조항	내용	영역	권리유형	조항	내용	영역	권리유형
1조	아동(18세 미만) 정의	(실천원칙)		28조	피교육권	정치적·사회적 영역 3	발달권
2조	무차별 평등의 원칙			29조	교육의 목표	(교육·여가)	발달권
3조	아동의 최상이익 최우선의 원칙			31조	휴식·여가보장권		발달권
4조	당사국의 실천 의무	(실천방법)		22조	난민아동의 보호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영역 4 (난민 아동 등 특별 보호)	보호권
5조	부모(법적 대리인)의 책임·권리 존중			30조	소수민족아동의 보호		생존·보호권
7조	성명(이름)·국적권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	생존·보호·발달권	32조	노동착취로부터의 보호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 4 (난민 아동 등 특별 보호)	생존·보호권
8조	신분보장권		생존권	33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		생존·보호권
12조	의사표시권		발달·참여권	34조	성적·한대로부터의 보호		생존·보호권
13조	표현의 자유		발달·참여권	35조	유인·매매·거래 금지		생존·보호권
14조	사상·종교의 자유		발달권	36조	기타 착취로부터의 보호		보호권
15조	결사·집회의 자유		발달·참여권	37조	고문·사형 금지		보호권
16조	사생활의 보호		보호권	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생존·보호권
17조	정보접근권		발달·참여권	39조	요보호아동의 지원		보호권
37조	고문·사형금지(1)		보호권	40조	소년법의 상소권		보호권
9조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 1 (가정 환경, 대리 보호)	생존·발달권	41조		국내·국제적 존중
10조	가족재결합 출입국	보호·발달권					
11조	국의 불법 이송금지	보호·발달권					
18조	부모양육 지원(1·2)	참여권					
19조	폭력·학대·착취로부터의 보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 2 (건강·복지)	생존·보호권	42조	협약 홍보의 의무	(이행 및 감독)	
20조	부모역할 대리		생존·보호권	43조	아동권리 위원회		
21조	기관 일양		생존·보호권	44조	보고서 제출		
25조	양육지정아동 치료권		보호권	45조	UN과의 협력 관계		
27조	생활보장권(4)		생존권	46조	가입		
39조	요보호아동의 지원		생존·보호권	47조	비준		
6조	고유한 생명권		생존·발달권	48조	승인		(부칙)
18조	부모양육 지원(3)	참여권	49조	효력 발생			
23조	장애아동의 보호	생존·보호권	50조	개정안			
24조	건강·의료 지원	생존·발달권	51조	유보조항			
26조	사회보장권	생존권	52조	협약의 실효			
27조	생활보장권(·2)	생존권	53조	위임자(사부총장)			
			54조	위임받은 조권대사			

별을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5)의 최소고용연령은 근로기준법 개정(1997)을 통해 13세에서 15세로 조정되었다. (6)의 아동권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NGO에 의한 인권교육이 거취되었으나,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7)의 아동권리지표는 아동권리학회 아동지표개발팀(1999)에 의해 개발되어 10개 분야별 30개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표 2-1〉과 〈표 2-2〉). 이 연구는 CRC의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선행연구를 기초로 총 227개 세부지표 목록을 10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전문가 의견조사방법으로 30개 주요 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분류 및 지표선정에 있어서 타당도 검증이 미흡한 점, 각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비교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지표의 항목들이 CRC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제 2차 정부보고서(1999)를 평가한 이기범의 연구(1999)에서는 국내 아동관련 법에 있어서 아동·청소년·미성년에 대한 상이한 연령규정 등으로 인해 CRC가 제도적 준거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CRC 권리영역을 생존권, 교육권, 복지권, 사회권, 문화권, 경제권, 취약한 아동집단권리로 나누어 국내 이행수준을 평가하였다. 특히 복지권 영역에서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부모기능의 시시와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존권 영역에서는 여아·장애아·탈북아동 정책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표 2-1〉 아동권리지표(지표 1~15)

분야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주요 지표	지표 정의	CRC
인구	아동인구 특징	아동인구 크기	아동인구비율	총인구 중 아동(18세 미만)의 비율	1조
		아동인구 구성	연령별 구성	아동의 연령(0~1, 2~6, 7~12, 13~15, 16~18) 별 인구 구성비: (연령별 인구/총인구) × 100	
			성별 구성	아동의 연령별 여아 수에 대한 남아 수의 비율	
생명 및 생존	생명 및 생존	위생	상수도보급률	총인구 중 상수도 보급된 가구의 인구 비율	3·24조
		사망	영아사망률	지난 1년간 총 출생수 중 영아(1세 미만) 사망수 비율	6·24조
		안전 및 사고	안전사고 아동사상자율	해당 연도 총아동인구 중 지난 1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부상 아동 수의 비율 *사망: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부상: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경우	3·24조
보건	보건	장애	장애아동 출현율	아동인구 천명 당 장애아동 수	23조
		질병	아동의 주요 질환 유병률	총아동인구 중 주요 질환 아동환자 수의 비율	24조
		건강	신체충실지수	아동의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비율	24·27조
보육	학습 준비도	문해경험	유문해경험 아동 비율	총학령전아동 중 부모·양육자가 매일 또는 자주 책을 읽어준 경험이 있는 아동 비율	18·28조
	보육시설	시설 및 안전	부대시설 보유율	총보육시설 중 전기, 급수, 냉·난방, 소방 보유 시설 수의 비율	18조
		보육 수급률	일반아동/장애아동 보육수급률	총보육대상아동(7세 미만) 중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7세 미만) 수의 비율	18·23조
교육	교육기회	취학률	총취학대상 인구 중 학생비율	총취학대상 아동인구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 수의 비율	28조
	교육과정	학교교육 만족도	학생과 부모의 교육내용·교사에 대한 만족도	학교 교육내용과 교사 자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시한 집단의 비율(%)	28·29조
	교육결과	학업 성취도	영역별학업 성취평균점수	초·중·고교 학생의 단계별로 정해진 교육영역별 학업성취 평균점수	28조

〈표 2-2〉 아동권리지표(지표 16~30)

분야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주요 지표	지표 정의	CRC
가족	가족크기와 형태	가족형태	가족형태별 분포	총가구 중 가족형태(양부모가구, 편부모가구) 별 구성비	18조
	가족의 안정성	가족해체	이혼가정 자녀 수 비율	총아동인구 중 부모가 이혼한 아동비율	9조
	가족내 아동학대	아동학대	아동학대유형별 구성비율	총아동인구 중 학대유형(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별 경험이 있는 아동비율	19·9·34조
사회성 발달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유능감	생활만족도	총아동인구 중 가정생활/학교생활/친구관계/사회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이상으로 대답한 아동비율	3조
		여가생활	하루평균 여가시간	아동이 하루에 학업 이외의 활동(독서/관람/TV시청/스포츠/여행 등)에 사용하는 평균 시간 수	31조
	시민권리와 자유	정보 접근권	학교별 컴퓨터 1대당 아동 수	초·중·고교별 총학생 수 중 각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컴퓨터 대수의 비율	17조
사회보장	사회보장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비율	총 아동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 수의 비율	26조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예산 중 아동복지 예산의 비율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중 아동복지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	26조
			서비스 내용별 예산의 비율	전체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중 서비스 내용별 예산의 비율	26조
경제적 안정	가구의 경제적 능력	아동양육비 부담	최저아동양육비 이하 가구비율	총 아동가구 중 아동양육비 지출이 영양·보건·교육 등 아동의 정상적 양육에 필요한 최저한의 비용선 이하인 아동가구 수의 비율	4·18·27조
		가구의 구매력	가구 평균소득	단위 기간당 개별 가구 구성원의 임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을 합한 금액	4·18·27조
	아동자신의 경제적 능력	아동의 취업	취업아동의 평균임금	취업아동(15세~18세)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평균임금	32조
문제행동과 사회적 환경	문제행동	비행	주요범죄의 아동인구 비율	총 범죄자 중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40조
		비행의 처리	아동범죄 처리의 유형별 분포	아동범죄의 사법처리 유형(기소, 불기소, 소년부 송치)별 분포(명, %)	40조
	사회적 환경	유해환경	성폭력 피해경험 아동인구 비율	총 성폭력피해경험자 중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34·35조

3. 아동권리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1) 아동권리유형별 비교

요보호아동 대상의 아동복지법(1961)이 전체아동 대상의 아동복지법(1981)으로 개정된 이후 20년만에 전면 개정(2000. 1. 12.)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앞에서 구성한 아동권리의 유형화 기준(ISCA, 1993: 195)에 근거하여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CRC와 국내 아동복지법 간의 비교에 앞서 양자의 법적 성격의 차이로 인한 연구방법의 기본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전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으로서 협약 당사국의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신우철, 1997: 98). 반면에 후자는 아동복지 책임자에 대해 의무 부과와 벌칙 위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실질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보장하기보다는 행정편의와 규제 위주의 단순한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후자로부터 아동권리를 추출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더구나 해당 권리의 규정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권리의 개념을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을 받게 하기 위한 법률상의 힘으로 정의하고 반사적 이익, 즉 법이 일정한 사실을 금지하거나 명하여 어떤 사람이 저절로 받게 되는 이익도 이 연구의 권리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ISCA(1993: 195)의 아동권리유형화 기준을 객관적 준거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로써 이 연구는 연구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CRC의 국내 이행 현황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CRC와 국내 아동복지법을 비교하기 위하여 <표 1>과 <표 3>을 아동권리의 영역별로 분석하면, 우선 시민적·정치적 권리영역에 있어서 국내 아동복지법은 CRC와 비교할 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위탁보호·입소·후견인 결정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의사표시권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도 최근의 동법 개정(2000)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CRC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권, 신분보장권, 표현의 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고문·사형금지 조항 등은 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련법(국적법·헌법·소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접근권,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

〈표 3〉 개정 아동복지법(2000)의 내용분석

조항	내용	영역	권리유형	조항	내용	영역	권리유형	
1조	목적(행복·안전)	(실천원칙)		11조	시설아동 퇴소연장(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영역3 (생존·보 호권교육, 여가)	발달권	
2조	아동(18세 미만) 정의 * 아동학대 개념 등			16조	아동복지시설설치(1·3) * 주간보호·방과후 지도		발달권	
3조	기본이념(CRC:무차별·최우선)			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발달권	
4조	책임	(실천방법)		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 * 학대자의 상담·교육 * 가정조사 * 학대예방·홍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영역4 (학대받은 아동 등 특별보호)	생존·보호· 발달권	
5조	어린이날							
6조	아동위원(명예직)							
7조	아동복지지도원(공무원)							
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15조	시설의 휴지·폐지							
19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0조	시설종사자 교육훈련							
21조	시설개선·정지·폐쇄							
22조	청문							
10조	보호조치(3·4) * 아동의 의사존중	시민적 정치적 권리 영역	보호·참여권	26조	아동학대신고의무·절차		생존·보호권	
13조	후견인 선임 등(1)							보호·참여권
28조	보조인 선임 등 * 학대증언서 신분보호							보호권
38조	비밀누설 금지 * 사생활 보호							보호·발달권
41조	벌칙(2) * 아동의 답변보장		보호권	27조	응급조치의무 등		생존·보호권	
				29조	금지행위		생존·보호권	
10조	보호조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영역 1 (가정 환경, 대리 보호)	생존·보호· 발달권	30조	조사 등	(실천방법)	보호권	
11조	시설아동 퇴소연장			보호·발달권				
12조	친권 제한·상실신고			보호·발달권				
13조	후견인 선임·해임			보호·참여권				
16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생존·보호· 발달권				
				32조	비용징수			
				33조	보조금 반환명령			
				34조	국유재산 무상대여			
18조	시설장의 의무			보호·발달권				
				35조	면세			
		36조	압류금지					
4조	상애아동의 권익(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영역 2 (건강, 복지)	생존·발달권	37조	아동복지단체 육성	(부칙)		
8조	보건소 (전염병 예방 등)			생존·발달권				
				39조	권한 위임			
				40조	벌칙			
				41조	벌칙			
				42조	미수범			
9조	아동의 건강·안전			생존·발달권	43조		양벌규정	
23조	장애아동의 보호	생존·발달권	부칙 1~4	경과조치·관련법령개정				

표시권, 15세 이상 아동의 입양 이외의 의사표시권(입양특례법 제 6조 : 15세 이상 아동의 입양관련 의사표시권 규정)은 농법은 물론 관련법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이배근, 1998). 특히 동법 제 12조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에 있어서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을 네 가지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영역에 있어서 국내 아동복지법은 CRC와 비교하여 가정환경보다는 대리보호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능한 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부모 역할을 지지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일반가정 아동의 권리보다는 이미 해체된 가정의 부모 역할을 대리하는 치료 차원의 위탁보호·입양·시설보호와 관련된 아동의 권리로 제한되어 있다(A. Kadushin, 1980: 5). 대리보호 가운데 위탁보호는 동법 제 10조 제 1~3항에만 규정되어 있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동법은 시설보호에 편중되어 시설보호아동의 입소·퇴소, 상담·치료, 친권상실, 후견인 선임, 가족복귀, 직업훈련, 자립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CRC에 규정된 부모양육지원, 생활보장, 가족재결합 등에 관련된 일반아동의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동법 개정을 통하여 제 16조에 일반아동 및 가정을 위한 상담, 일시보호, 단기보호, 주간보호, 방과후 지도,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이 임의규정으로 신설되었다. 둘째, 건강과 복지 영역에 있어서 국내 아동복지법은 법률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CRC와 비교하여 복지보다는 건강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것도 장애아동의 보호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CRC에 명시된 전체아동의 사회보장권과 생활보장권이 국내 관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의 발달 특성과 특수한 욕구를 고려한 규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더구나 외국 아동은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결식아동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아동수당과 같은 아동복지 관점의 부모양육 지원 및 생활보장권이 동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한편 건강 영역에 있어서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교육, 장애아동의 권익보호 규정이 동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셋째, 교육과 여가 영역에 있어서 국내 아동복지법에는 입소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을 통한 피교육권(해당 아동의 교육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호기간 연장)과 어린이회관·야영장·아동복지관 등 여가시설의 설치, 그리고 시설의 보육·방과후 지도가 임의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CRC의 피교육권과 교육 목표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적극적인 의미의 휴식·여가보장권은 국내 관련법에서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놀이와 여가의 중요성이 여전히 간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특별보호 영역에 있어서 국내 아동복지법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에 편중되어 있으며, CRC의 탈북아동 등 난민아동·소수민족아동·법률저촉아동·약물남용아동·무력분쟁으로 고통받은 아동·노동 착취 등을 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권도 최근의 동법 개정 에 의하여 법적 구속력과 전문적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보장받게 되었다.

다음으로 <표 1>과 <표 3>을 아동권리의 유형(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별로 비교하면, 국내 아동복지법 전문 47조 가운데 아동권리로 추출된 23개 조항(조항당 다수 및 중복 유형 포함)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보호권·발달권·생존권·참여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CRC 전문 54조 가운데 아동권리를 규정한 39개 조항(조항당 다수 및 중복 유형 포함)을 분류한 결과, 보호권·생존권·발달권·참여권의 순으로 나타났다(ISCA, 1993). 이를 통해 양자는 아동의 보호권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참여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RC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전의 아동권리선언(1959)에서 볼 수 없었던 의사표시권, 정보접근권, 표현·사상·종교·결사·집회의 자유가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아동의 시민적 자유권을 최근에 이르러서야 보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아동의 참여권이 충실하게 보장됨으로써 아동의 욕구가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 국내 아동복지법에서도 개정을 통해 2개 조항에 아동의 의사존중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CRC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대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국내 아동복지법은 CRC에 비하여 아동의 기초생활보장 등 생존권 규정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행 아동복지법이 최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대리보호 중심의 선별적이며 치료적인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보다 보편적이며 예방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아동권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참여권과 생존권의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현행 아동복지법이 분산된 많은 관련법령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완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때에 무엇보다도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재인식하고 아동의 표명된 욕구를 기초로 전체 아동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존권과 아동이 관련된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

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참여권과 함께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권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아동권리지표별 이행현황 분석

〈표 2-1〉과 〈표 2-2〉에서 제시한 아동권리지표(30개) 별로 선행조사연구의 자료를 수집하여 CRC의 국내 이행 현황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표 4-1〉과 〈표 4-2〉와 같다. 우선 인구분야에 있어서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1995) 결과,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13,351,449명으로서 전체인구(44,553,710명)의 29.97%로서 매년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연령별로는 0~1세 10.11%, 2~5세 20.35%, 6~12세 33.88%, 13~15세 18.58%, 16~18세 17.08%로 구성되어 있고, 성별로는 남자 52.17%와 여자 47.86%로 구분된다. 특히 총 출생성비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113.4(여아 100명에 대한 남아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성비격차가 더 크다(www.nso.go.kr). 생명·생존분야에 있어서 1997년도 상수도 보급률은 84.47%로서 비교적 위생적이며, 영아(0~364일)사망률도 계속 낮아져 1996년 현재 8.0%로서 영아생존율이 매우 높다. 한편 교통사고·익수·추락으로 인한 사망아동 수는 연간 2,177명(10만 명당 1.63)으로서 안전사고 사망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1998). 최근에 이르러서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과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보건분야에 있어서 1995년도 장애아동 출현율은 천 명당 3.88이며, 연령별로는 5세 이하 1.36, 6~11세 4.78, 12~14세 4.52, 15~17세 6.02로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장애출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 1.64, 지체장애 1.25, 언어장애 0.53, 청각장애 0.32, 시각장애 0.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자폐이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조기진단·교육 등 예방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아동이 연간 의사의 진단을 받은 주요 질환(결핵, 암, 심장질환, 폐질환 등)에 있어서 폐질환의 유병률이 천 명당 13.23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1999a). 또한 아동의 신체충실지수(치중/신장 2)는 매년 지

〈표 4-1〉 아동권리지표(지표1~15)별 국내 이행현황

지표	국내 현황
1 아동인구비율	아동인구(13,351,449명)/총인구(44,553,710명)×100=29.97% (통계청, 1995)
2 아동인구의 연령별 구성	0~1세: 10.11%, 2~5세: 20.35%, 6~12세: 33.88%, 13~15세: 18.58%, 16~18세: 17.08% (통계청, 1995)
3 아동인구의 성별 구성	남: 52.17%, 여: 47.86% (통계청, 1995)
4 상수도 보급률	84.47% (환경부, 1998)
5 영아사망률	남: 8.3%, 여: 7.7%, 전체: 8.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6 안전사고 아동사상자율	사망아동 수(2,177명)/아동인구 수(13,351,449명)×100,000=1.63 (단위: 1/100,000 명) (통계청, 1998a)
7 장애아동 출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세: 1.36, 6~11세: 4.78, 12~14세: 4.52, 15~17세: 6.02 지체장애: 1.25, 시각장애: 0.14, 청각장애: 0.32, 언어장애: 0.53, 정신지체: 1.64 18세 미만 전체 아동의 장애아동출현율: 3.88(단위: 1/1000,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8 아동의 주요질환 유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핵·폐결핵: 0.62(0~9세), 0.55(10~19세) 신생물(암): 0.68(0~9세), 2.13(10~19세) 심장질환: 1.88(0~9세), 1.79(10~19세) 폐결핵: 13.23(0~9세), 7.80(10~19세) (단위: 1/1000, 명) (보건복지부, 1999c)
신체총질(신체중량) 지수	6세(남 16.1, 여 15.6)~12세(남 19.3, 여 19.4), 13세(남 19.9, 여 20.2)~15세(남 20.9, 여 21.0), 16세(남 21.3, 여 21.3)~17세(남 21.6, 여 21.3) (교육부, 1998)
10 유문해경험아동 비율	
11 보육시설의 부대시설(전 기/급수/생·난방/소탕) 보유율	<p>국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 각 100개 (대도시 120, 중소도시 120, 농촌 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00개 시설 대상 보육시설환경 평가 결과: 전체 66.0% 수준 (전체 시설의 38%는 소방시설 즉각 사용불가, 73%는 안전훈련 미실시, 40%는 유아 신체조건에 적합한 변기·세면대 미비, 54%는 식기 소독기 미비, 33%는 샤워기 미비) (이순형, 1998; 194~195)
12 일반아동 보육수급률 장애아동 보육수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세 보육수급아동(655,384명)/ 보육대상아동(1,083,000명)×100=60.51% (보건복지부, 2000a) 0~5세 보육수급장애아동(4,684명)/ 장애아동(15,779명)×100=29.69% (보건복지부, 2000c)
13 총취학대상인구 중 학생 비율	유치원 37.3%, 초등학교 98.6%, 중학교 98.8%, 고등학교 97.3% (교육부, 1999)
14 학생의 교육내용/ 교사 만족도	교육내용: 29.6%, 교사: 32.8%, 시설: 21.3%, 교우관계: 63.4%, 주변환경: 17.9%, 전체만족도: 34.4% (통계청, 1998b)
15 영역별 학업성취 평균점수	<p>수학: 한국(618), 일본(601), 미국(545), 17개국 평균(538) 과학: 한국(604), 일본(580), 미국(571), 17개국 평균(548) (국제학업성취도평가협회, 1999)</p>

〈표 4-2〉 이동권리지표(지표16~30)별 국내 이행현황

지표	국내 현황
16 가족형태별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가족(79.8%) : 부부 12.6%, 부부(양부모) + 미혼자녀 58.6%, 편부(모) + 미혼자녀 8.6%, 직계가족(20.3%) : 부부 + 양(편) 친 1.1%, 부부 + 양(편) 친 + 자녀 8.0%, 기타 가족 11.2% (통계청, 1995)
17 이혼가정자녀(미성년) 수 비율	이혼가정 미성년 자녀 수(76,828명)/전체아동 수(13,351,449명)×100=0.6% (통계청, 1995) 0.9% (통계청, 1998c)
18 아동학대 유형별 구성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발생비율(학대받은 아동이 있는 가구 수/전체 가구 수)×100=43.7% 아동학대유형별 구성비율 : 신체적 학대(23.5%), 방임(20.2%), 정서적 학대(19.0%), 성적 학대(1.1%) (홍강의 외, 2000)
19 아동의 생활만족도	만 14~17세 1,000명의 가정생활 만족도 50.5%, 학교생활 만족도 41.0%, 사회에 대한 만족도 15.5%, 자아 만족도 37.2%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20 아동의 하루평균 여가시간	중·고등학생 600명의 1인 1일 평균 2시간 20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21 학교별 컴퓨터 1대당 아동 수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3.1명, 일반고 30.9명, 실업고 8.0명 (한국교육개발원, 1998)
22 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인구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6% (보건복지부, 1999b) 1999년 3/4분기 최저생계비(중소도시 4인 가구, 85만9천 원) 기준, 절대빈곤인구 : 전체 인구의 9.9%(464만 명) → 절대빈곤인구의 약 6.3%는 기초생활보장 미수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23 사회복지예산 대비 아동복지예산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예산 대비 아동복지예산비율 : 1.12% 사회복지서비스예산 대비 아동복지예산비율 : 9.25% (보건복지부, 2000c)
24 아동복지예산 대비 서비스 내용별 예산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보호(77.16%), 소년소녀가장보호(17.34%), 그룹홈운영(0.12%), 입양(0.42%), 가정위탁보호(0.66%), 결연기관운영(2.43%), 퇴소아동자립지원(1.24%), 미아찾아주기센터운영(0.10%), 어린이날행사(0.03%), 행정경비(0.04%) (보건복지부, 2000c)
25 최저 아동양육비 이하 가구비율	1999년 3/4분기 저소득층 인구 : 전체 인구의 13.2%(619만 명) 상대빈곤선(중위근로자 소득의 50% : 4인 가구, 104만5천 원) 기준 이하 가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26 가구 평균소득	2000년 2/4분기 2,331,000원 (통계청, 2000)
27 취업아동의 평균 임금	1998년 2/4분기 취업 아동(19세 미만)의 평균임금 : 636,390원 (노동부, 1999)
28 주요범죄의 아동 인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범죄(161,277명)/총범죄(2,341,431명)=6.9% 소년범죄 유형별 비율 : 강력범(살인·강도·강간·방화) 3.8%, 폭력범(폭행·상해·공갈·협박·감금·유인 등) 35.4%, 재산범(절도·횡령·배임·장물·사기) 28.3%, 교통사범 25.8%, 기타 6.7% (보건복지부, 1999c)
29 아동범죄 처리의 유형별 분포	기소 35.1%, 불기소 50.8%, 소년 부송치 14.0% (보건복지부, 1999c)
30 성폭력 피해경험 아동인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피해아동 사례 수 1,014/총 성폭력상담 의뢰사례 수 2,564×100=39.6% 연령별 : 0~6세 사례 191(7.4%), 7~12세 사례 319(12.5%), 13~18세 사례 504(19.7%) (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교육부, 1998).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신체적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보육분야에 있어서 유문해경험아동 비율에 관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으며, 아동권리 지표로서의 의미도 미약하여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등 다른 지표로 대체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부대시설보유율에 관한 이순형(1998)의 연구결과, 전국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총 300개 시설(국공립·민간·가정 보육시설 각 100개)의 보육시설환경은 평균 66.0%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시설의 73%는 안전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40%는 유아의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번기와 세면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1994년 이후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으로 인하여 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일반아동의 보육수급률은 1999년 9월 현재 60.51%를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a). 그러나 장애아동의 보육수급률은 2000년 3월 현재 29.69%에 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b). 따라서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0세~2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의 확충은 물론 시설기준 및 안전교육의 의무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향상 등 보육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교육분야에 있어서 1998년도 취학률은 유치원 37.3%, 초등학교 98.6%, 중학교 98.8%, 고등학교 97.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교육부, 1999). 그러나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34.4%로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내용과 시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통계청, 1998).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 체벌, 강제 이발, 소지품 검사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제협력성취도평가 협회(1999)가 17개국의 9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취를 위해 아동의 욕구와 인권이 경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보다는 교육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향상정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직계가족(20.3%)과 핵가족(79.8%)으로 구분되며, 후자에는 부부(무자녀)가족(12.6%), 양부모가족(58.6%), 편부모가족(8.6%)으로 구성된다(통계청, 1995). 한편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수는 1995년 현재 76,828명이며, 전체아동인구의 0.6%에 해당한다(통계청, 1995). 이 외에 부모의 별거나 혼외 출산 등을 고려하면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조이혼율(인구 천명당 이혼수)이 1975년 0.5에서 1997년 2.0으로, 결혼에 대한 이혼율이 5.8%에서 18.0%로 급증함으로써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수는 1998년 현재 115,637명(전체아동의 0.9%)으로 추정된다(통계청, 1998c). 또한 홍강의 외(2000)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발생비율은 43.7%이며, 신체적 학대 23.5%, 방인 20.2%, 정서적 학대 19.0%, 성적 학대 1.1%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사회성 발달분야에 있어서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미국·프랑스·일본의 만 14~17세 아동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개발원(2000)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 가정생활 50.5%, 학교생활 41.0%, 자아 37.2%, 사회 15.5%의 순으로 만족도를 나타냈다. 각 항목에 있어서 한국 아동은 미국이나 프랑스 아동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에 일본 아동보다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이나 일본(6.0%)의 아동이 매우 낮은 사실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는 아동의 권리가 경시되는 유교문화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한국 93.8%, 프랑스 63.9%, 일본 41.8%, 미국 41.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한국 아동이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육개발원(1999)의 컴퓨터 1대당 아동 수(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3.1명, 일반고 30.9명, 실업고 8.0명)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편 중·고등학생의 여가는 하루 평균 2시간 20분(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의 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보다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써 한국 아동의 컴퓨터이용도는 매우 높으나, 학업 이외의 자율적 활동의 제한 등으로 사회적 유능감은 그렇게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분야에 있어서 1999년 전체인구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3.6%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1999b). 그러나 1999년 3/4분기 최저생계비(중소도시 4인 가구: 85만 9천원)를 기준으로 절대빈곤인구는 전체 인구의 9.9%이므로 절대빈곤인구의 약 6.3%는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따라서 사각지대에서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약 8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 예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2.0%(2000년 3월 현재 16만 4천 명)가 결식아동으로서 중식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교육부, 2000). 그러나 아동복지예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의 1.12%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의 9.25%로서 노

인복지예산이나 장애인복지예산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0c). 또한 책정된 예산의 96.28%가 대리적 서비스(시설보호 77.16%, 소년소녀가장보호 17.34%, 퇴소아동 자립지원 1.24%, 입양 0.42%, 그룹홈 0.12%)에 편중되어 있으며, 별도로 책정되는 보육서비스를 제외하면 부모의 역할을 지지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서비스에는 거의 책정되어 있지 않다.

경제적 안정분야에 있어서 최저아동양육비 이하 가구비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1999년 3/4분기 상대빈곤선(중위근로자 소득의 50%: 4인 가구, 104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인구를 파악한 결과, 전체인구의 13.2%인 619만 명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최저아동양육비 이하 가구비율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수의 가구가 아동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수당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2000년 2/4분기 가구 평균소득은 2,331,000원(통계청, 2000)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1998년 2/4분기 19세 미만 아동의 평균임금(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정액 및 초과급여)은 636,390원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지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이며 상용근로자 10인 이하 소규모 작업장에서의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노동부, 1999).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 자신의 경제력은 물론 가구의 경제적 능력도 현저하게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행동·사회적 환경분야에 있어서 전체범죄(2,341,431명) 가운데 소년범죄(161,277명)비율은 6.9%이며, 주요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 35.4%, 재산범 28.3%, 교통사범 25.8%, 기타 6.7%, 강력범 3.8%의 순으로 폭행, 상해 등의 폭력범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범죄의 처리유형별 분포는 불기소 50.8%, 기소 35.1%, 소년부 송치 14.0%로서 기소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c). 한편 1999년도 성폭력상담 의뢰사례 수(2,564건) 가운데 아동사례는 1,014건으로서 39.6%를 차지하며, 전체사례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0~6세 7.4%, 7~12세 12.5%, 13~18세 19.7%로 나타났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이를 통해 아동의 비행발생비율이 높으며 성폭력피해경험 또한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아동권리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는 CRC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민법·교육법·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고, 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CRC를 홍보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동권리지표도 개발하였다. 그러나 ISCA(1989: 182)는 한국의 비준이래 어떠한 변화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사회는 유교문화적 영향으로 인하여 CRC에 대해 편파적인 해석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아동의 권리강호가 성인의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하며,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CRC의 유보조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한 예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특성이 아동과 여성을 성인 남성에 종속시키며, 이러한 문화적 규범에 포함된 불공평한 권력관계가 아동의 인권침해는 물론 학대 및 착취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고등학생들이 종래의 두발규제에 저항하여 인터넷을 통해 노컷(no cut) 운동을 전개한 결과, 교육부는 2000년 10월부터 비인격적 규제를 풀고 전면 자율화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학교별로 학생·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교칙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참여권이 단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일보, 2000. 10. 4).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CRC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유형화 기준과 아동권리지표에 근거하여 CRC와 국내 아동복지법을 비교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민적·정치적 권리영역에 있어서 국내 아동복지법은 CRC에 비교하여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대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위탁보호·입소·후견인 결정에 관한 의사표시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반아동의 정보접근권과 의사표시권(특히 동법 제 12조의 친권제한 및 친권상실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영역에 있어서 국내 아동복지법은 치료적 차원의 시설보호와 관련된 권리로 편중되어 있으며, 동법 제 16조에서 예방적 차원의 상담·주간보호·단기보호·방과후보육·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장애아동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전체아동의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나 생활

보장권, 휴식·여가보장권, 외국아동·난민아동(탈북아동 등)·법률저촉아동에 대한 보호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CRC의 실천원칙에 따른 아동권리유형별로 분류하면, 국내 아동복지법의 대다수 조항은 아동의 보호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2개 조항만이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최근에 신설되었고, 대리보호아동의 참여권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CRC에 비교하여 전체아동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존권의 규정이 매우 미흡하며, 아동의 발달권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다.

(3) 아동권리지표별로 국내 현황을 분석하면, 아동인구는 전체인구의 29.97%로서 감소하고 있으며, 총 출생성비는 113.4로서 성비격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아사망률(8.0%)은 낮아지고 신체충실지수는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사고사망률(10만 명당 1.63)·장애아동출현율(1천 명당 3.88)·폐질환유병률(1천 명당 13.23)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학령전 아동의 보육시설 환경평가는 평균 66.0%로서 안전교육 및 시설기능이 미흡하며, 비장애아동의 보육수급률은 60.5%이나 장애아동의 경우는 29.7%이다.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과 학업 성취도는 매우 높으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4.4%로서 낮은 편이다. 전체가족의 형태 중 편부모가족의 비율(8.6%)이 높아지면서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수는 115,637명(전체아동의 0.9%, 1998년)이다. 이혼 등 가족해체의 영향으로 아동학대 발생비율은 43.7%이며, 신체적 학대(23.5%)·방임(20.2%)·정서적 학대(19.0%)·성적 학대(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성폭력피해사태는 전체 성폭력사태의 39.6%(영·유아 7.4%, 초등학교 12.5%, 청소년 19.7%)나 된다. 한편 아동의 컴퓨터이용도는 매우 높으나, 학업 이외의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부족하며 아동의 가정·학교·자아·사회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아동의 약 6.3%는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16만 4천 명은 결식학생으로서 교육부로부터 중식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 예산은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의 1.12%에 불과하며, 책정된 예산의 96.28%는 대리적 서비스(주로 시설보호)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인구의 13.2%가 저소득층에 해당되나 3.6%만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9.6%는 아동양육비의 부족 등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아동 자신의 평균임금(636,390원)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소년범죄는 전체범죄의 6.9%로서 폭력범·재산범·교통사범·강력범의

순으로 발생하며, 불기소(50.85)·기소(35.1%)·소년부송치(14.0%)의 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아동복지법에 정보접근권과 의사표시권(특히 부모면접권, 15세 미만 아동의 입양에 대한 의사표시권, 상소권 등)을 규정하고, 동법 제12조의 친권제한 및 친권상실시 해당 아동의 의사존중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모역할을 지지하거나 보충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법 제16조의 상담·주간보호·단기보호·방과후보육·아동학대예방사업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동법 제17조의 여가시설 설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아동의 여가보장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수당 등 전체아동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은 물론 외국아동·난민아동(탈북아동)·법률저촉아동의 보호권을 신설·규정하여야 한다.

(2) 현행 아동복지법은 입양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분산된 관련법령을 포괄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완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때에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재인식하여 아동의 표명된 욕구를 기초로 전체아동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존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관련된 일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참여권을 강화하며 전체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권을 통합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아동권리지표별로 분석된 내용을 10개 분야별로 대별하여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면, ① 인구분야에 있어서 여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태아성감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근절시키고 성비 불균형에 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명 및 생존분야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감소를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 제9조에 신설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③ 보건분야에 있어서 장애아동출현율과 폐질환유병률의 감소를 위한 조기진단 등 예방대책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보육분야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보육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의 설치 관련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비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전문성을 보강하며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보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⑤ 교육분야에 있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부적응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⑥ 가족분야에 있어서 급증하는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의무신고제 등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전문적 개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사회성발달분야에 있어서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권리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⑧ 사회보장분야에 있어서 아동복지예산을 증가시켜 아동수당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된 가구의 경제력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⑨ 경제적 안정분야에 있어서 의무교육을 마치고 취업하는 아동의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⑩ 문제행동과 사회적 환경분야에 있어서 상담과 같이 부모 및 가족의 역할을 지지하고 보충하는 예방차원의 서비스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가족해체, 아동비행 등 사회문제를 경감시키며, 사회적 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시킬 수 있다.

한편 아동권리지표의 후속연구에서는 유무해경험아동비율과 영역별 학업성취 평균 점수를 유의한 지표로 대체하고, 각 지표의 비교기준을 설정하며 CRC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지표 항목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조사 방법을 실시하고,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관련법들의 내용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8.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 1999. 한국의 교육지표.
- 교육부, 2000. 내부자료.
- 국제학업성취도평가협회, 1999.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 노동부, 1999.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 변용찬, 1999.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 2차 국가보고서.” 《아동권리연구》, 제 3권 제 2호, pp. 43~68.
- 배경내, 2000.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서울: 우리교육.
- 보건복지부, 1999a. 1998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
- 보건복지부, 1999b. 1999년도 주요항정통계.
- 보건복지부, 1999c. 청소년백서.
- 보건복지부, 2000a. 2000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0b.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 2000c. 2000년도 아동복지국고도조사사업안내.
- 신우철, 1997. “아동의 권리.”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pp. 85~110.
- 아동권리학회아동지표개발팀, 1999. “한국의 아동권리지표개발연구.” 《아동권리연구》, 제 3권 제 1호, pp. 5~19.
- 안동현, 1999.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과제.” 《아동권리연구》, 제 3권 제 2호, pp. 27~42.
- 이기범, 1999.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2차 보고서의 평가와 향후 과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 3권 제 2호, pp. 69~83.
- 이바근·이용교·루은숙, 1997.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참여연대.
- 이바근, 199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복지학》, 7호(특집호), pp. 354~376.
- 이순형, 1998. “보육시설의 환경 및 운영평가와 정편 대안.” 《한국보육사업 평가와 대안》, 한국 영유아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83~252.
- 이채연·이소라, 1998.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부모·교사의 인식.” 《아동권리연구》, 제 2권 제 1호, pp. 25~41.
- 이태수, 1999. “정녕 대한민국은 아동의 천국인가?” 《월간-복지동향》, 제 12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pp. 36~38.
-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통계청, 1998a. 사당원인통계연보.
- 통계청, 1998b.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1998c.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2000. 도시기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1998. 한국의 교육지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청소년문화정서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영아사망·주산기사망의 수준과 원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의 빈곤실태 및 특징.
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1999년도 상담현황 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새천년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홍강의 외. 2000.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
환경부. 1998. 상수도통계.
“과양 : 뒤틀린 입양문화 또 다른 아동유기.” 《국제신문》. 2000년 1월 20일.
“매매춘 미성년 잠사, 수사의지 있다.” 《한겨레신문》. 2000년 10월 2일.
“중고생 두발 학교 자율로.” 《한국일보》. 2000년 10월 4일.
“아동학대 가해자 아버지가 대부분.” 《사회복지신문》. 2000년 10월 11일.
“시간제 근로는 청소년 인권 사각지대.” 《연합뉴스》. 2000년 10월 13일.

Kadushin, A. 1980. *Child Welfare Services*, 3r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3.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Training Kit*.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9. *Children's Rights: Realty or Rhetoric*.
Save the Children Korea. 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

A Comparative Study o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and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Prof. Lee, Hye-Won

(Dept. of Social Welfare, Sung Kong Ho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CRC) and to find out new direc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children's rights in Korea. Based on the module of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3) about the children's rights and the Indicators of Korean Children's Wellbeing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999), the revised Korean child welfare law (2000) as a related domestic law has compared with the 54 articles of CRC (198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nalyzed as follows: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has only 2 articles o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need and neglects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e general children at home. In consequence the Korean law has few survival rights of the general children for securing their adequate living standards and supplementing their parents' role. And it limits only to the development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need, therefore, it neglects the general children's rights to information, play and leisure, cultural activities. Above all, it has only 2 articles on the participation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Indicators of Korean Children's Wellbeing, the collected data say that the budget for the child welfare is only 1.12 % of the total budget of the ministry of the health and welfare and its 96.28% is for the children in substitutional care.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and new direc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children's rights are also suggested.